

「면세 · 과세물품」 & 「수입금지 · 제한물품」



면세 및 과세대상 물품

❖ 면세대상 물품여 과세가격 한도내에서 면세

- **이사자** :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해외에
- **단기체류자** : 3월 이상 사용물품에 한해서 **3월 이상 사용한 이사물품** 중 「**과세대상 물품**」을 제외한 물품은 기본적으로 **면세**
- 단, 아래의 지정물품은 **가족 수에 따른 인정수량만 면세**

지정 물 품	가족수	수량
> 내구성 가정용품(단기간 내 변질되거나 변형됨이 없는 가구,가전제품 등 가정에서 쓰이는 물품을 말하며, 잡화·의류 등 개인 용품을 제외)	1~2명	1개
	3~4명	2개
	5~8명	3개
	9명 이상	4개

❖ 과세대상 물품

- **선박, 항공기**
- **보석, 진주, 별갑, 산호, 호박, 상아** 및 이를 사용한 제품으로 개당 **500만원 이상**
- **자동차**(이륜자동차 포함)
- **신품** 또는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전 **3월 미만 사용한 물품**
- 이사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 **수량을 초과하는 물품**

※ 과세대상 물품은 사용 여부를 불문하고 세금이 부과되는 품목임

- 다만, 우리나라에서 반출되었다가 다시 반입되는 것임이 수출신고필증 또는 다른 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은 면세

수입금지 및 수입제한 물품

❖ 수입금지 물품

- 헌법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치는 서적, 영화, 음반, 조각물, 음란물 등
- 위조 상품 등 지적재산권 침해물품, 위변조 화폐 및 유가증권 등
-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

※ 수입금지물품은 이사물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, 수입통관이 불가함

❖ 수입제한 물품

-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또는 방위사업법에서 규제하는 총포, 도검, 화약류
-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제하는 아편, 대마초 등 마약류
- 식물방역법, 가축전염병예방법 등에서 규제하는 농림축산물 및 살아있는 동물
- 야생동식물보호법/약사법에서 규제하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(CITES) 및 이로 만든 제품
-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규제하는 감청설비

※ 수입제한물품은 해당 기관의 허가, 승인 등 증명서를 제출해야 통관이 가능함

이사물품 중 세관 신고 대상물품

- 신품 또는 3월 미만 사용물품
- 자동차(이륜자동차 포함)
- 총포(엽총, 모의총포 포함), 석궁, 도검(장식용 포함)
- 보석 등 고급 신변장식용구(개당 500만원 이상의 것)
- 직업(전공학생 포함)과 관계없이 반입하는 그랜드 피아노 등 고급 악기, 작품 제작용 비디오 카메라, 영사기 등
- 대리운반물품, 회사물품, 상용물품,과다반입물품 등
- 수입금지물품 및 수입제한물품

☞ 상기의 신고대상물품을 이사물품신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20%를 가산세로 징수하거나 통고처분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음